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1165호

「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에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스폭발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및 해체신고서에 가스시설 등의 안전조치 여부 기재란 추가(안 별지 제5호 서식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건축안전과장)에게

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428호
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
- 전화(☎) 044-201-4986, 4989 / 팩스 044-201-5575